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돌봄의 날 지정·통합지원 서비스 확대 등》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590호)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847호)
-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71호)
-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85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5
1. 돌봄의 날 지정(이수진의원안)	5
2. 임종과정지원 서비스 추가(허성무의원안)	9
3. 영양사가 제공하는 영양관리 서비스 추가(강선우의원안)	14
4. 재활서비스의 제공 주체 명시 등(이개호의원안)	19

I. 개요

1.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59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28.

(3) 회 부 일 : 2025. 3.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7월 유엔 총회는 성평등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10월 29일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로 선포하면서, 공공돌봄의 강화와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 그리고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지킬 것을 촉구한 바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돌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2.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84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허성무의원 등 20인

(2) 제 안 일 : 2025. 3. 12.

(3) 회 부 일 : 2025. 3.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스피스 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일상생활돌봄서비스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일상생활돌봄서비스를 확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임종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말기환자이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통합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임종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3.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67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강선우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4. 9.
- (3) 회 부 일 : 2025. 4. 1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이 법은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영양·돌봄 영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소화흡수력 약화, 활동량 감소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도 떨어져 영양 불균형 상태에 놓일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중 하나로 영양사가 제공하는 영양 관리 서비스를 포함함으로써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8호 신설).

4.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28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개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30.

(3) 회 부 일 : 2025. 5.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들에게 보건의료 분야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간호사가 지원하는 간호서비스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음.

그러나 재활서비스의 경우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인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와 간호사가 제공하는 간호서비스 처럼 재활서비스의 경우도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명시하는 한편, 장기요양의 경우에도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규정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안 제17조).

Ⅱ. 검토 의견

1. 돌봄의 날 지정(이수진 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415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u><신 설></u>	법률 제20415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u>제4조의2(돌봄의 날) ① 돌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정한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u> <u>③ 제2항에 따른 돌봄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나. 주요 검토 사항

- 보건복지부의 치매 역학조사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년도 치매환자 수는 97만명에 이르고 내년에는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급격한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돌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는 낮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치매 환자 수 전망>



자료: 2023년 치매역학조사, 보건복지부

- 관련하여 유엔(UN) 총회에서도 2023년 제93차 총회에서 결의안을 통해 매년 10월 29일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로 지정하고 돌봄의 중요성과 돌봄 경제 투자 필요성을 인식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유엔(UN) 총회 결의안 주요 결의사항>

- 10월 29일을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International Day of Care and Support)’로 공식 지정한다.
- 모든 유엔 회원국, 유엔 체계 내 조직, 기타 국제·지역·국가 조직 및 이해관계자(시민사회, 민간 부문, 학계, 개인 포함)는 매년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을 기념하고, 돌봄의 중요성과 돌봄 경제 투자 필요성을 인식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 유엔 여성기구(UN-Women),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국제노동기구(ILO)는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을 효과적으로 기념하기 위한 활동을 주도하도록 한다.
- 이 결의안에 따른 모든 활동의 재정은 자발적인 기부(민간 부문 포함)로 충당할 것을 강조한다.
- 사무총장은 유엔 체계 내 모든 관련 기관과 회원국에게 본 결의안을 공유하고,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 기념을 장려하도록 요청한다.

□ 개정안은 유엔(UN) 총회에서 권고한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인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여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려는 것으로, 돌봄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여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에서 정한 돌봄의 날이 일시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돌봄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돌봄주간을 함께 규정할 필요도 있어 보임.

<기념일 관련 타입법례>

「아동복지법」 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옹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14조(장애인의 날) 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일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4조(정신건강의 날) 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건강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참고로, 2025년 1월 현재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기념일 또는 기념주간으로 지정된 사례는 140건이며(참고자료 1), 그 중 희귀질환 극복의 날(2월의 마지막 날), 암 예방의 날(3. 21.), 보건의 날(4. 7.) 등 총 28건이 보건복지부 소관임(질병청 소관 2건 제외).

* 행안부(14건), 여가부(13건), 문체부(13건), 농식품부(9건), 고용부(7건), 해수부(7건), 중기부(5건), 식약처(4건), 산업부(4건), 기타 부·처·청(2건 이하) 지정 운영 중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발의 취지에 공감하나 국가 기념일을 정하기 위해서는 국제 동향 모니터링 및 국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의견 >

보건 복지부	◦ ‘돌봄’에 관한 사회적 관심 고조가 필요하다는 발의 취지는 공감하나, 국가의 기념일로 정하기 위해 국제 동향 모니터링 및 국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 최근 결의된 사항으로(‘23.7월 국제기념일 지정 결의(UN)), 국가 기념일 지정 필요성에 대한 국내 공감대 미확인, 지정한 외국 사례도 아직 없음* * 검색, 공공운수노조(10.29 국제돌봄의 날 조직위원회) 및 외교부 유엔과 등 문의 결과 국가 기념일 지정 사례 없음
행정 안전부	◦ 기존 기념일과 유사·중복 등 없는지, 기념일 지정이 적절한지 및 정책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종합적 검토 필요

2. 임종과정지원 서비스 추가(허성무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말기환자이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통합지원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임종과정지원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415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u><신설></u>	법률 제20415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u>제18조의2(임종과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기환자이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통합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임종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나. 주요 검토 사항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종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임종 과정의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통합적 돌봄지원을 통해 그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참고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6년 시행될 예정으로, 보건의료(제15조), 건강관리 및 예방(제16조), 장기요양(제17조), 일상생활돌봄(제18조), 가족 등 지원(제19조) 등의 분야에서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의 확대 및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요 서비스 내용」

제15조(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의료기관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2.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유지·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4. 장기입원 및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등의 의료서비스
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사업
6. 방문 구강관리
7.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제16조(건강관리 및 예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의 노쇠,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건강관리 및 예방 등의 활동이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 간 협력을 통하여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방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통합지원 기반을 조

성하여야 한다.

제17조(장기요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인한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성질환예방 사업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제18조(일상생활돌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심신기능을 유지·향상하고 일상 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재가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등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기관 등 방문을 위하여 필요한 이동지원 서비스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기구에 관한 서비스
4.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통합지원 대상자가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적합한 시설·기관에 통원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서비스
5. 통합지원 대상자의 안전 및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위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6. 통합지원 대상자의 기능·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거 공간의 확보·제공 또는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지원 서비스
7.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하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
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9.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19조(가족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부양하거나 상담, 정보제공 및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보호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한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 15조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사업을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안에 따른 임종과정지원 서비스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임.

<임종과정지원 서비스 관련 입법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의료기관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2.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유지·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4. 장기입원 및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등의 의료서비스 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사업 6. 방문 구강관리 7.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제21조(호스피스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말기환자등의 적절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2.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 개발 및 보급 3.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4.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5.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사업 7. 말기환자, 호스피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이하 “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 8.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의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해 통합적 돌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개정안의 내용은 임종과정·말기환자 등에 대한 호스피스 강화 의무를 부과한 기존 규정과 내용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단체 의견 >

대한 의사 협회	◦ 개별 서비스 항목의 법률 명시 및 확대 추진보다는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제도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통합돌봄지원 관련 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지난 2024년 8월부터 기존 비급여였던 임종실의 설치운영이 의무화되고 급여화됨에 따라, 호스피스 입원료 등 관련 수가의 개선으로 재정 지출이 이미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지원 서비스의 추가 확대는 이중적인 재정 지출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

3. 영양사가 제공하는 영양관리 서비스 추가(강선우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지원하는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에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가 제공하는 영양 관리 서비스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415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7. (생략) <u><신설></u> 8. (생략)	법률 제20415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보건의료)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u>영양사가 제공하는 영양 관리 서비스</u> 9. (현행 제8호와 같음)

나. 주요 검토사항

-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중 보건의료 분야(제15조) 규정을 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료서비스, 간호사의 간호서비스, 약사의 복약지도 등은 보건의료분야 통합지원 서비스의 하나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영양사에 의한 영양관리 서비스는 제외되어 있음. 다만, 제15조제8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어 논의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에 영양사에 의한 영양관리서비스도 포함될 여지는 있음.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규정(제15조)」

제15조(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의료기관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2.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유지·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4. 장기입원 및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등의 의료서비스
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사업
6. 방문 구강관리
7.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 참고로, 2020년 기준 총 영양사 수는 149,050명으로 이 중 54.3%인 81,052명이 의료기관 등에 채용되어 활동중인 것으로 파악됨.

<영양사 현황>

(단위 : 명)

연도	전체 (A)	활동 영양사		
		소계(B)	의료기관	비의료기관
2018	141,582	74,946	9,654	65,292
2019	145,606	78,223	9,939	68,284
2020	149,050	81,052	10,384	70,668

* 출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국가통계포털, 재구성(※국가통계포털은 2025년 업데이트 예정)

□ 한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2조제3호)¹⁾에 따라 의사, 간호사 등과 마찬가지로 영양사도 보건의료인력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영양사가 제공하는 영양관리 서비스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추가할 경우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 영양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법률의 주요 적용 대상인 노인과 장애인의 영양 불균형 해소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앞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실시 중인 바, 구체적으로 보면 보건의료 분야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영양사를 전문인력으로 포함하여 영양 및 식습관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장기요양 분야의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관리사가 영양상담·식사 제공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며, 일상생활지원의 경우 방문의료지원센터(팀)에 영양사를 선택적으로 배치하여 영양 관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도 함.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내 영양 관련 서비스>

구분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	재가 의료급여 사업	일상생활지원 중 영양·식사지원
지원대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주거 연계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
지원내용	비만, 영양 및 식습관, 신체활동 등 주기적으로 생활습관 모니터링	의료·복지·영양 상담, 모니터링 제공 복지관, 민간 도시락 제공기관 등 활용, 식사·밑반찬·식재료 제공	영양상담 및 식재료·도시락 등 제공 *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등 연계 제공 가능
제공인력	사업 참여의원 내 의사, 간호사, 영양사	의료급여관리사 (병원 협업)	영양사, 조리원, 보조원 등

□ 다만, 영양관리 서비스에는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식단 , 급식시설 관리 등 다양한 업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정 취지에 맞게 이를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도 있겠음.²⁾³⁾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노인, 장애인 등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확충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돌봄통합지원법에 기 규정된 건강관리 및 예방(제16조), 장기요양(제17조), 일상생활돌봄(제18조) 등을 근거로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등 각종 사업 내 식사·영양 사업과 기 연계 이루어질 수 있

2) 「국민영양관리법」 제10조(영양·식생활 교육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식생활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환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3)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가 제공하는 영양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영양 관리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 추진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는 내용으로, 별도로 조항을 신설하여야 할 필요성 및 영양사의 구체적인 역할, 영양 관련 서비스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단체 의견 >

대한 영양사 협회	◦ 개별 맞춤형 영양서비스는 돌봄통합지원대상자가 1순위로 원하는 서비스로, 돌봄통합지원 대상자는 소화기능 저하, 만성질환 보유 등으로 영양사가 제공하는 전문영양서비스가 필수적이므로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임.
대한 의사 협회	◦ 영양 관리 서비스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나, 현재 돌봄통합지원 제도의 정착 상황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별도의 영양 관리 서비스를 통합지원 법률에 신설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므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함. 향후 의료-돌봄 연계체계가 충분히 구축 이후 과학적 근거 및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재활서비스 제공 주체 명시(이개호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의료 분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명시하고, 장기요양 분야에 서비스에 방문재활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7조),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415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생략) 3. <u>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유지·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u>	법률 제20415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보건의료) ----- ----- ----- ----- ----- -----. 1.·2. (현행과 같음)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유지·회복을 위해 제공하는 <u>재활서비스</u>

4. ~ 8. (생 략) 제17조(장기요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인한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u>재가급여 및 시설급여</u> 3.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17조(장기요양)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u>방문재활 및 재가급여와 시설급여</u> 3. (현행과 같음)
--	---

나. 주요 검토사항

-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중 보건의료 분야(제15조) 규정을 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료서비스, 간호사의 간호서비스, 약사의 복약지도 등은 보건의료분야 통합지원 서비스의 하나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4)에 따른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의 재활서비스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다만, 제15조제8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어 논의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에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도 포함될 여지는 있음.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규정(제15조)」

제15조(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의료기관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2.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유지·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4. 장기입원 및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등의 의료서비스
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사업
6. 방문 구강관리
7.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①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2. 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3.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4. 작업치료사: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5. 치과기공사: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6. 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 참고로,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물리치료사 89,158명, 작업치료사 25,665명 등 총 114,823명이 활동중인 것으로 파악됨.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현황>

(단위 : 명)

연도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소계
2023	89,158	25,665	114,823

* 출처: 2024 보건복지통계연보(보건복지부)

- 한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2조제3호5))에 따라 의사, 간호사 등과 마찬가지로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는 보건의료인력으로서 개정안과 같이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의 재활서비스를 보건의료분야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범위에 법률에 명시하여 추가할 경우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법률의 주요 적용 대상인 노인과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 회복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 외, 장기요양 분야의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개정안에서는 현재의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외에 방문재활을 추가하고 있음. 이는 금번 개정안과 같이 발의된 것으로 방문재활을 재가급여의 하위 목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안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방문재활을 재가급여의 하위 목적으로 신설하는 것인 만큼, 별도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방문재활을 둘 필요성은 적은 것으로 보임.

<장기요양 분야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관련 현재 규정 및 개정안 비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17조(장기요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인한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성질환 예방사업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u>재가급여 및 시설급여</u>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제17조(장기요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인한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성질환 예방사업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방문재활 및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호의 재활서비스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유지·회복과 관련한 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의 폭넓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업무로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방문재활’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조문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재가급여’ 하위에 ‘방문재활’이 신설되어도 ‘재가급여’에 포함되므로, 「돌봄통합지원법」상 별도로 명시하도록 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단체 의견 >

대한 의사 협회	◦ 동법 제15조(보건의료)는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항목만을 열거할 뿐, 특정 직역은 명시하지 않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직역만을 선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의 일관성을 해치고,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의사 등 다양한 관련 직역 간 갈등과 정책 집행상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제도 시행 전부터 불필요한 직역 간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법률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

문 의 처

02)6788-5496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1	해양안전의날	매월 1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법
2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	행정안전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3	한국수어의 날	2.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화언어법
4	한국수어 주간	한국수어의 날이 속한 주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화언어법
5	문화유산 방재의날	2.10.	국가유산청	문화재보호법
6	희귀질환 극복의 날	2월의 마지막날	보건복지부	희귀질환관리법
7	국립공원의 날	3. 3.	환경부	자연공원법
8	여성의 날	3. 8.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9	흙의 날	3.11.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어업법
10	의용소방대의 날	3.19.	소방청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	암 예방의 날	3.21.	보건복지부	암관리법
12	결핵 예방의 날	3.24.	질병관리청	결핵예방법
13	수산인의날	4. 1.	해양수산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14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15	전기의 날	4.10.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 25.1.10. 시행예정
16	편의증진의 날	4.10.	보건복지부	장애인등편의법
17	도시농업의 날	4.11.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농업법
18	도서관의 날	4.12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법
19	도서관 주간	4.12부터 1주간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법
20	국민안전의 날	4.16.	행정안전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1	장애인의 날	4.20.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22	장애인 주간	4.20.부터 1주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23	자전거의 날	4.22.	행정안전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24	새마을의 날	4.22.	행정안전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25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4.28.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	4.28.부터 1주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27	청소년의 달	5월	여성가족부	청소년기본법
28	가정의 달	5월	여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29	근로자의 날	5. 1.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30	씨름의 날	음력 5.5.	문화체육관광부	씨름진흥법
31	어린이 날	5. 5.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32	어버이 날	5. 8.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33	유권자의 날	5.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34	유권자 주간	5.10.부터 1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35	바다식목일	5.10.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36	한부모가족의 날	5.10.	여성가족부	한부모지원법
37	양잠인의 날	5.10.	농림축산식품부	가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8	입양의 날	5.11.	보건복지부	입양특례법
39	입양주간	5.11.부터 1주일	보건복지부	입양특례법
40	식품안전주간	5.7.~5.2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기본법
41	식품안전의 날	5.1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기본법
42	가정의 날	5.15.	여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43	발명의 날	5.19.	특허청	발명진흥법
44	세계인의 날	5.20.	법무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45	세계인주간	5.20.부터 1주간	법무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46	문화다양성의 날	5.2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47	문화다양성 주간	5.21.부터 1주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48	방재의 날	5.25.	행정안전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49	중소기업주간	5월 셋째 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법
50	통일교육주간	5월 넷째 주	통일부	통일교육지원법
51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5.25.~5.31.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52	해외파병용사의 날	5.29.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3	환경교육주간	환경의 날(6.5.)이 포함된 1주간	환경부	환경교육법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54	국악의 날	6. 5.	문화체육관광부	국악진흥법
55	구강보건의날	6. 9.	보건복지부	구강보건법
56	기록의 날	6. 9.	행정안전부	공공기록물법
57	헌혈자의 날	6.14.	보건복지부	혈액관리법
58	노인학대예방의 날	6.15.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59	해양조사의날	6.21.	해양수산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60	선원의 날	6월 셋째 주 금요일	해양수산부	선원법
61	전자정부의 날	6.24.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
62	마약퇴치의 날	6.26.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63	사회적기업의 날	7. 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
64	사회적기업 주간	7.1.부터 1주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
65	협동조합의날	7월 첫째 토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66	협동조합 주간	협동조합의 날 이전1주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67	여성기업주간	7월 첫째 주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68	도농교류의 날	7. 7.	농림축산식품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69	방위산업의 날	7. 8.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0	인구의날	7.11.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71	연안안전의 날	7.18.	해양경찰청	연안사고예방법
72	연안안전점검 주간	7월 셋째 주	해양경찰청	연안사고예방법
73	유엔(UN)군 참전의 날	7.27.	국가보훈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74	섬의 날	8. 8.	행정안전부	섬 발전 촉진법
75	이산가족의 날	추석 전전날 (음력 8월 13일)	통일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 류 촉진에 관한 법률
76	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림 의 날	8.14.	여성가족부	위안부피해자법
77	양성평등주간	9.1.~9.7.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78	양성평등 임금의 날	양성평등주간 (9.1.~9.7.)중 하루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79	통계의 날	9. 1.	통계청	통계법
80	여권통문의 날	9. 1.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81	태권도의 날	9. 4.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82	지식재산의 날	9. 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기본법
83	고향사랑의 날	9. 4.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
84	사회복지의 날	9. 7.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85	사회복지주간	9.7.부터 1주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86	곤충의 날	9.7.	농림축산식품부	곤충산업법
87	생명나눔 주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	보건복지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88	숙련기술인의 날	9.9.	고용노동부	숙련기술장려법
89	자살예방의 날	9.10.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
90	자살예방 주간	9.10.부터 1주일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
91	해양경찰의 날	9.10.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법
92	산업단지의 날	9.1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93	성매매 추방주간	9.19.~9.25.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자보호법
94	연안정화의 날	9월 셋째 토	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 리법
95	청년의 날	9월 셋째 토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
96	청년주간	청년의날부터 1주간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
97	치매극복의 날	9.21.	보건복지부	치매관리법
98	조달의 날	9.30.	조달청	조달사업법
99	개인정보보호의 날	9.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100	경로의 달	10월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101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102	동물보호의 날	10. 4.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103	세계 한인의날	10. 5.	재외동포청	재외동포기본법
104	세계한인주간	10.3.~10.9.	재외동포청	재외동포기본법
105	임산부의 날	10.10.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106	정신건강의 날	10.10.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107	정신건강주간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108	여성어업인의날	10.10.	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109	스포츠의 날 (前체육의날)	10.15.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기본법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110	여성농업인의 날	10.15.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의2
111	호스피스인의 날	10월 둘째 주 토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112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본법
113	회계의 날	10.31.	금융위원회	외부감사법
114	동반성장주간	11월 첫째 주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5	임업인의 날	11. 1.	산림청	임업진흥법
116	손상예방의 날	11. 1.	질병관리청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5.1.24. 시행예정
117	수소의 날	11. 2.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8	한글 점자의 날	11. 4.	문화체육관광부	점자법
119	한글 점자 주간	한글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	문화체육관광부	점자법
120	소상공인의 날	11. 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기본법
121	소상공인 주간	소상공인의 날 이전1주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기본법
122	소방의 날	11. 9.	소방청	소방기본법
123	보행자의 날	11.11.	국토교통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124	유엔참전용사 국채추모의 날	11.11.	국가보훈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125	농업인의 날	11.1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26	약의 날	11.18.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127	아동학대예방의 날	11.19.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128	아동학대예방주간	11.19.부터 1주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129	김치의 날	11.22.	농림축산식품부	김치산업 진흥법
130	민원의 날	11.24.	행정안전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31	중견기업주간	11월 셋째 주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132	가정폭력추방주간	11.25.~12.1.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133	성폭력추방 주간	11.25.~12.1.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법
134	여성폭력추방 주간	11.25.~12.1.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135	자원봉사자의 날	12. 5.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36	자원봉사주간	12.5부터 1주일간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37	국가유산의 날	12. 9.	국가유산청	국가유산기본법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138	기부의날	12월 둘째 월	행정안전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139	기부주간	12월 둘째 주간	행정안전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140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12.23.	해양경찰청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본 자료는 각 기념일의 개별법률 소관부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음.